

지방자치관련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법률 제6497호 (2001.7.24.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중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63호 (2001년 9월 15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청사 등을 건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하고, 수의 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의 납입고지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영 제30조제3항단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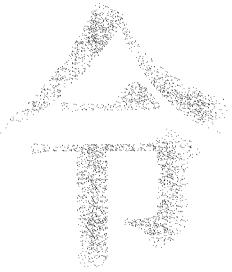
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실업대책에 따라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영 제88조제1항제17호 내지 제25호 신설)

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시·도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을 징수한 때에는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구에 귀속시켰으나, 앞으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차등화 함(영 제100조제6항 및 제105조제2항)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한 자에게 납무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2회까지 다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0조제6항 및 제105조제2항)마. 불용결정한 구형컴퓨터 등을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용으로 양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2조제5항)

3.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판례

99다69341 소유권확인 (자) 상고기각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경상남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상남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1다14023 공사대금 (다)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의 요건과 절차〉

구 지방배정법 제63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5. 15).

98다5109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의 한계〉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한계는 그들이 반

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7. 13).

2001도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라) 파기환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의 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7. 13)

99두9971 면직무효확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취소할 수 있는 기한〉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더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부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8. 24)

〈편집부〉